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
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의 확대,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,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, 과태료 부과행위 신설 등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「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9727호, 2023. 9. 14. 공포, 2024. 3. 15. 시행)됨에 따라 준설품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및 기준,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 교육 관련 사항, 연안정화의 날 세부 사항,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, 신설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준설품질 외 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 명시 등(안 제9조)

- 1) 준설품질 외 활용 가능한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”을 조개류의 껍데기로 규정(안 제9조제1항)
- 2) 제1항 신설에 따라 기존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“부분에서”를 “부분 후단의”로 조문 정비(안 제9조제2항)

- 3) 법 제18조제1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및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인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음을 규정(안 제9조제3항제3호)
- 4) 별표 3을 “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의 기준”에서 “활용할 수 있는 준설물질 등의 기준”으로 개정하고, 제3호에 조개류의 껍데기를 활용하는 경우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도록 규정(안 제9조 별표 3)

나. 법 제19조에서 기술능력이 기술인력으로 개정됨에 따라 연계되는 시행령에도 동일하게 개정 반영(안 제10조, 제11조, 제11조 별표 4, 제14조)

다.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주기 등 규정(안 제11조의2)

- 1) 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은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에 대한 교육을 5년 주기로 받되 최초 교육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받도록 규정(안 제11조의2제1항)
- 2) 최초 교육과 재교육의 교육기간을 구분하여 규정(안 제11조의2제2항)

라.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구체적 사항에 대해 규정(안 제13조의2)

- 1) 연안정화의 날을 9월 셋째주 토요일로 규정(안 제13조의2제1항)
- 2) 연안정화주간 설정, 연안정화의 날에 대한 교육·홍보 등 행사 실시

- 및 유관단체 등에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 규정(안 제13조의2제2항)
- 마.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부유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(안 제16조제2항)
- 바. 운반장비를 이용하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 배출, 그 외 생활폐기물 배출,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 등 신설된 과태료 조항에 대한 부과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한 자구 수정(안 제17조 별표 5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 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생 략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의 제목 “(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의 기준 등)”을 “(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 등의 기준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”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.

제9조제2항(종전의 제1항) 중 “부분에서”를 “부분 후단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품질을 다음”을 “다음”으로 하며,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인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

제10조제2항제1호 중 “기술능력”을 “기술인력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 제목 “(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)”을 “(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기술능력”을 “기술인력”으로 한다.

제11조의2 및 제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) ①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. 이 경우 기술인력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최초로 받는 교육: 3일 이내
2. 제1호 외의 교육: 2일 이내

제13조의2(연안정화의 날)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연안정화의 날은 9월 셋째주 토요일로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 의식고취 등을 위하여 연안정화주간을 설정하거나 연안정화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유관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제2호 중 “기술능력”을 “기술인력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3호 중 “준설물질”을 “준설물질 등”으로 한다.

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96조제1항에 따

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.

별표 3의 제목 “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의 오염도 기준 (제9조제1항 관련)”을 “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 등의 오염도 기준 (제9조제2항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3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조개류의 껍데기를 활용하는 경우의 기준: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.

별표 4의 제목 중 “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 (제11조 관련)”을 “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 (제11조 관련)”으로 한다.

별표 4의 표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구분	기술인력 기준
----	---------

별표 4 비고 제1호 중 “기술능력”을 “기술인력”으로 한다.

별표 5 제2호다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2항제1호”를 “제2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가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(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)	법 제39조 제1항제1호	250만원
---	---------------	-------

별표 5 제2호라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1호”를 “제1항제2호”로 하고, 같은 호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나.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(제	법 제39조 제2항제1호	50만원
--	---------------	------

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		
-----------------------	--	--

별표 5 제2호마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2호”를 “제1항제3호”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3호”를 “제1항제4호”로 하며, 같은 호 사목(종전의 마목) 위반행위란 사목 중 “제출한”을 “제출한 경우,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”으로 하고, 같은 란 중 “제1항제4호”를 “제1항제5호”로 하며, 같은 호 아목(종전의 바목) 위반행위란 아목 중 “보관·관리한 경우 또는”을 “보관·관리하거나”로, “제출한”을 “제출한 경우 또는 폐기물인계·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”으로 하고, 같은 란 중 “제1항제5호”를 “제1항제6호”로 하며, 같은 호에

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자. 법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경우	법 제39조 제2항제3호	100만원
---	------------------	-------

별표 5 제2호차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1항제6호”를 “제1항제7호”로 하고, 같은 호 카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“제2항제2호”를 “제2항제4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의 기준 등) <신 설>		제9조(활용할 수 있는 준설품질 등의 기준 등) 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의 “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”은 조개류의 껍데기를 말한다.		
①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별표 3의 기준을 말한다.		② ----- 부분 후단의 ----- -----.		
②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”란 깨끗한 모래 등 오염되지 않은 준설품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.		③ ----- ----- 다음 ----- -----.		
1. 2. (생 략) <신 설>		1. 2. (현행과 같음) 3. 「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적용대상이 되는 수산부산물인 경우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용도		
제10조(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) ① (생 략)		제10조(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절차) ① (현행과 같음)		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		② ----- -----		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.

1. 법 제19조제2항 및 이 영 제11조에 따른 기술능력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

2. ~ 4. (생략)

③ (생략)

제11조(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)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 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<신설>

--.

1. -----
----- 기술인력 -----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해양폐기물관리업의 기술인력 기준) -----

기술인력 -----
--.

제11조의2(해양폐기물관리업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등) ①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해양폐기물관리업자는 해양폐기물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 5년마다 1회 이상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해야 한다. 이 경우 기술인력은 교육대상자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최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

<신 설>

제14조(보고 및 출입·검사 등)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, 보고 및 확인·점검·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(생 략)
2.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능력, 선박·설비 및 장비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

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
1. 최초로 받는 교육: 3일 이내
2. 제1호 외의 교육: 2일 이내

제13조의2(연안정화의 날) ① 법 제29조의2에 따른 연안정화의 날은 9월 셋째주 토요일로 한다.

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폐기물 관리 의식고취 등을 위하여 연안정화주간을 설정하거나 연안정화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·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관계 행정기관의 장, 공공기관의 장 및 유관단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14조(보고 및 출입·검사 등) -

-----.

1. (현행과 같음)
2. -----
-- 기술인력-----

유지되는지 여부	-----
3. · 4. (생략)	3. · 4. (현행과 같음)
제15조(권한의 위임)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.	제15조(권한의 위임)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2. (생략)	1. ~ 12. (현행과 같음)
13.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<u>준설물질의 활용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수리</u>	13. ----- <u>준설물질 등</u> ----- -----
14. ~ 24. (생략)	14. ~ 24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업무의 위탁) (생략)	제16조(업무의 위탁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설></u>	② <u>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부유폐기물의 수거 업무를 「해양환경관리법」 제9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.</u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305